

## [서식 예] 도박죄

## 고 발 장

의 △ △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박 Δ Δ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최 A A O O 구 O O 길 O O

## 고 발 사 실

- 1. 피고발인들은 20○○. ○.경 각자 친구들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20○○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모텔에서 ○○:○○경부터 ○○:○○까지 1점당 ○○원씩 수십 회에 걸쳐 금 ○,○○○,○○○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며칠 후인 2000. O. O. 저녁 그들은 OO시 OO구 OO호텔에서 다시 만나이번에는 기왕 치는 것 화끈하게 치자며 점당 O,OOO원씩 당일 OO:OO부터 그 다음날 OO:OO까지 수십회에 걸쳐 도합 OO,OOO,OOO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고,
- 3.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점당 ○○,○○○원씩 ○○여회에 걸쳐 도합 금 ○○,○○○,○○○원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들이기에



고발조치 하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입 증 방 법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고발인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발권자	모든사람(형사소송법 234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발장 1부	관련법규	형법 246조
범죄성립 요 건	재물로서 도박한 때		
형 량	・1천만 원 이하의 벌금 ・상습범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(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)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(항고) •근거 : 검찰청법 10조 •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		